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(도봉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1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2월 15일

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 · 서윤기 · 이순자
유광상 · 김인호 · 황준환
송재형 · 최관술 · 김상훈
문영민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 중에 있음.
- 본 기금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,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주민생활개선, 기존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통해 교류창구 유지, 신뢰기반조성 기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음.
- 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·재난에 관한 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인 기근, 질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장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5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</u></p> <p><u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u></p>